

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146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3. 5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시정전반에 걸친 법률사상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두어 자문을 구하고 있는바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월 수당에 대한 조항을 입법기술에 맞게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 주 요 문 자

- 고문변호사 월 수당 지급 조항 개정 (안 제5조 참조)

" 월 50,000 원 이상 10 만원 이하 " 를 " 월 10 만원 이하 " 로 개정

3. 참 고 사 항

- 강권 법률 02124 - 98 ('93.3.24) 으로 정비한 시달 ————— 결 청
-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증개정조례

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중 "월액 50,000 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" 를 "월액 10 만원 이하의"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
제5조(수당)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	산의 범위안에서 월액 50,000 원 이상	제5조(수당) ① - - - - -	- - - - - 월액 10 만 원
10 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	우 위·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	이하의 - - - - -	- - - - -
를 1 월로 본다.		- - - - -	
② (생 략)		② (현행과 같음)	